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신원식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규모의 국방·군사시설사업 등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기준 이상일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10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소규모 국방·군사시설사업과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규모 국방·군사시설사업 규정(안 제4조제2항)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연면적 1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소규모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규정하여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사업 추진

나. 국방·군사시설사업참여자의 범위 확대(안 제8조의2제1항)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추가하여 대표자까지 포함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가 상호를 변경하여 입찰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함.

다. 벌점부과 기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신설(안 제8조의2)

1)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 대한 벌점은 법에 명시된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을 기준으로 2점부터 20점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2) 벌점을 부과받은 참여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군사기밀의 누설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 고의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2년으로 제한하고 고의 및 과실 등 죄질의 정도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조정하도록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에 따른 벌점의 범위를 설정함.

3) 단,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연면적 1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을 각각 제8조의3, 제8조의4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별점 부과기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이하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호의 대표자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로 지정한 자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및 별점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해당 인원에게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의3(중전의 제8조의2)제1항 중 “법 제14조의2제1항”을 “법 제14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4(중전의 제8조의3)전단 중 “법 제14조의2제1항”을 “법 제14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부과된 벌점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에 대한 공개

제10조 중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법 제14조의3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점 부과기준(제8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법 제3조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제2호의 별점 부과기준에 따라 별점을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별점을 합산한다.

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별점 부과기준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라. 별점은 부과된 날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며, 별점의 부과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에는 해당별점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2. 별점 부과기준

「군사기밀 보호법」 해당 조항		별점
제10조 (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제1항	2점
	제2항	15점
제11조 (탐지·수집)		10점
제11조의2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2점
제12조 (누설)	제1항	15점
	제2항	5점
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제1항	20점
	제2항	7점
제14조 (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		2점
제16조 (신고·제출·삭제의 불이행)	제1항	3점
	제2항	2점
	제3항	2점
제17조 (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제1항	2점
	제2항	15점

[별표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8조의2제4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국방부장관은 누적별점이 5점 이상인 경우 제2호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나. 국방부장관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별점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항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2. 누적별점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누적별점	제한기간
5점 이상 10점 미만	6개월
10점 이상 15점 미만	1년
15점 이상 20점 미만	1년 6개월
20점 이상	2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① (생략) <u><신 설></u>	제4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국 방·군사시설사업”이란 연면적 1 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u>
② ~ ④ (생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u><신 설></u>	<u>제8조의2(별점 부과기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① 법 제14 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참 여한 자(이하 “국방·군사시설사 업 참여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u> 1. <u>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한 자</u> 2. <u>제1호의 대표자</u> 3. <u>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 군사시설사업 참여자로 지정 한 자</u> ② <u>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u>

<u>제8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u> ① 국방부장관은 <u>법 제14조의2제1항</u>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 짝수 연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 ④ (생략) <u>제8조의3(공고의 방법 및 절차)</u> 국방부장관은 <u>법 제14조의2제1</u>	<u>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및 벌점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u> ③ <u>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해당 인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④ <u>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u> <u>제8조의3(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u> ① ----- <u>법 제14조의3제1항</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8조의4(공고의 방법 및 절차)</u> ----- <u>법 제14조의3제1</u>
---	---

한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방시설
본부령」 제3조에 따른 국방시
설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 4. (생략)

<신 설>

5. (생략)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사유지에 대한 정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원(權原) 확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행

제9조(권한의 위임)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부과된
벌점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에 대한 공개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법 제14조의3제2항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시설기획과	
연 락 처	(02) 748 - 5641